

전주지방법원 2024. 10. 25 선고 2024가단841 판결 [건물명도 및 임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1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23.31㎡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22. 4. 30.부터 제1항 기재 (가) 부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허윤범

별지